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230 | 2024.04.08 (2024.04.01~04.07)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29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04.01~04.07)

Contact: 백대용 변호사(파트너)

02-316-4630, 010-3248-5382
dybaek@shinkim.com

Summary

【정부의 주요 정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지난 해 발표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에 따라 디지털자원허브, 혁신서비스 테스트베드, 데이터레이크, 초거대 AI 등 민간 클라우드 기반 통합플랫폼(DPG 허브)을 구축하고, 국민체감형 AI 혁신서비스 개발을 하기 위한 2024년도 디지털플랫폼정부 인프라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향후 이를 통해 ►(국민·기업)은 민간·공공의 데이터·서비스를 DPG 허브를 통해 안전하게 연계·조립·융합하여 새로운 혁신서비스를 창출하여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정부·공공)은 DPG 허브를 통해 제공되는 공공·민간의 다양한 데이터 및 초거대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데이터 기반 정책수립 및 맞춤형 공공서비스 개발 등을 도모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처음으로 수립되는 법정계획인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책분과별 실무 토의, 관계부처 의견수렴, 대국민 공청회 등을 거쳐 전 부처를 포괄하는 국가전략기술 육성 비전, 기술별 목표 및 주요 정책과제를 마련하여 6월 중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 1위 바이오의약품 제조허브 도약을 위해 ① (투자) 17.7조원 규모의 바이오의약품 분야 민간투자 밀착지원 등을 통한 초격차 확보 ② (소부장) 글로벌 바이오소부장 스타 양성 ③ (인프라) 글로벌 생산허브 도약기반 마련 ④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경제영토 확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바이오제조 혁신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완화·중단·특례 등)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 6건(►‘생활규제 혁신’ 분야에서 공동체라디오의 청취자참여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 완화,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 분야에서 영세한 휴대폰 유통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니터링 축소,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 분야에서 광고성 정보전송 시 소상공인의 사전수신동의 절차 의무 유예, ►‘투자·창업 촉진’ 분야에서 방송프로그램 제작협찬 규제 완화, ►‘경영부담 경감’ 분야에서 지역방송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완화, ►‘경영부담 경감’ 분야에서 방송편성책임자 신고서류 간소화)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① 기술금융 원래의 취지를 살려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 강화, ② 평가사가 은행으로부터 독립되어 평가할 수 있도록 기술신용평가의 독립성 강화, ③ 기술신용평가 내실화, ④ 기술금융의 사후 평가 강화, ⑤ 기술금융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기술금융의 규율 강화 등을 담은 「기술금융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으며, 금년 중 제도적 정비 완료 추진을 목표로 신용정보원의 가이드라인, 매뉴얼 등은 상반기 중 신속하게 정비 완료, 신용정보법 개정은 상반기 중 개정안을 마련해 금년 중 국회 통과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입법(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친환경자동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배터리 등 화재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하이브리드자동차의 고전원배터리 등에 대한 검사기준을 내실화하여 도로 안전을 확보하고, 장거리 운행 및 과다 적재 등으로 다른 자동차에 비해 교통사고 위험도가 높고 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대형 승합자동차와 화물자동차의 검사기준을 강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는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요청 권한 규정, 벤처기업 성장촉진 지원사업의 종류 구체화, 벤처지원전문기관의 지정기준·절차, 지정취소 및 운영 등 규정, 연구원의 휴직이 허용되는 연구기관의 범위 규정,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방법이 법률로 상항됨에 따라 삭제 등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령상 면책특례 대상이 되는 '채권금융기관'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법상 공제조합 등을 추가하여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한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재입법시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에서 지적된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그리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발생을 방지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건전한 영업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4. 2. 13.)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유효기간 갱신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국민체감형 시 기반 디지털플랫폼정부(DPG) 혁신서비스 개발’ 추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6
- 기술패권 경쟁을 주도하는 미래 청사진,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수립 착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 .. 7
- 세계1위 바이오의약품 제조허브 도약을 위한 「바이오제조 혁신전략」 발표(산업통상자원부) 8
- 방송통신 시장 활성화 위해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방송통신위원회) 11
-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11조원+@ 규모의 은행권 지원프로그램 개시(금융위원회) 12
- 「기술금융 개선방안」 발표(금융위원회) 14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16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국방부) 16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산업통상자원부) 17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환경부) 17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환경부) 17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에너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산업통상자원부) 18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고용노동부) 18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고용노동부) 19
- 궤도운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20
-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21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21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중소벤처기업부) 22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중소벤처기업부) 23
-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금융위원회) 23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금융위원회) 2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금융위원회) 24

3. 법률 발의(제출)안

[바로가기](#)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의원 등 10인) 26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 예정된 회의 일정 없음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29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04.01~04.07) [바로가기](#)

- [금융]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신속고발·통보(Fasttrack) 제도가 도입됩니다
- [조세] 토지 취득 이후 불리하게 변경된 감면조례에 따라 추징된 취득세, 재산세를 취소시킨 사례
- [공정거래]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시행과 그 시사점
- [건설/부동산] 신탁형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에게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ESG]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준비
- [금융] 상장폐지절차 간소화 정책 및 업무사례 소개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체감형 AI 기반 디지털플랫폼정부(DPG) 혁신서비스 개발’ 추진

- '24년도 234억 규모 디지털플랫폼정부 인프라 사업
설명회 개최

2024-04-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2024년도 디지털플랫폼정부 인프라 사업 설명회를 개최함

디지털플랫폼정부 인프라 사업은 지난해 발표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에 따라 디지털자원허브, 혁신서비스 테스트베드, 데이터레이크, 초거대 AI 등 민간 클라우드 기반 통합플랫폼(DPG 허브)을 구축하고, 국민체감형 AI 혁신서비스 개발을 하기로 함

< 각 주체별 ‘DPG 허브’ 이용 목표 >

- ▶ (국민·기업) 민간·공공의 데이터·서비스를 DPG 허브를 통해 안전하게 연계·조립·융합하여 새로운 혁신서비스를 창출하여 국민 삶의 질 개선
- ▶ (정부·공공) DPG 허브를 통해 제공되는 공공·민간의 다양한 데이터 및 초거대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데이터 기반 정책수립 및 맞춤형 공공서비스 개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는 이번 사업설명회를 통해 디지털플랫폼 인프라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기업 및 국가·공공기관·지자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지난 3월 29일 공고한 ① AI·애자일방식, ② AI·API 기반 혁신 서비스 개발 지원사업을 설명하고, 4월 중 공고 예정인 ③ 디지털플랫폼정부 통합 플랫폼 구현 사업, ④ 데이터레이크 운영 사업, ⑤ 민간 클라우드 기반 테스트베드 구현·제공 사업에 대해 순차적으로 설명함

< 2023년 디지털플랫폼정부 인프라 사업 내용 >

사업명	예산	주요내용	대상
① AI·애자일기반 혁신서비스 개발지원	16억원	지속적으로 피드백·보완이 가능한 애자일 개발방법론 실증(4건)	- 공공·민간 컨소시엄(기업, 부처·공공기관·지자체 등)
② AI·API기반 혁신 서비스 개발 지원	5억	민간·공공의 API로 국민체감 혁신서비스 개발, 생성된 서비스·API 개방	- 공공·민간 컨소시엄(기업, 부처·공공기관·지자체 등)
③ 통합플랫폼 구현	108억	DPG 허브 인프라 구축(디지털자원등록저장소, 디지털파이프라인 구축 등)	- 조달 공고
④ 테스트베드 제공	65억원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서비스 개발·시험·검증 환경 및 기술지원조직 운영	- 클라우드 사업자(CSP·MSP 등)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
⑤ 데이터레이크 운영	40억원	분야별 여러 기관 데이터 축적/데이터 분석, AI모델 개발/초거대AI 접목, 서비스 개발(5건)	- 공공·민간 컨소시엄(기업, 부처·공공기관·지자체 등)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민첩하게 핵심 기능을 개발·배포하고, 사용자의 요구 또는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서비스를 지속 수정·보완하는 'AI 애자일 기반 혁신서비스 개발 사업' 4개 과제 선정
- ② AI·API기반 혁신서비스 개발 지원사업은 1개 과제를 선정하며, 민간·공공의 데이터·서비스·첨단기술 API를 조립·결합하여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고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서비스·데이터·첨단기술 API를 공개(6개 이상) 예정
- ③ DPG 통합플랫폼 구현 사업은 민간·공공의 데이터와 서비스 기능을 자유롭고 안전하게 연결하고, 이를 융합·활용하여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최상위 플랫폼 구현 사업으로, 올해 2월에 수립된 정보화전략계획(ISP)에 따라 구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
- ④ DPG 테스트베드 제공사업은 소외되기 쉬운 중소·벤처·스타트업·시민개발자 등도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서비스를 개발·시험·검증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하고, 개발 전 과정에 걸쳐 전문기술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을 통해 민간 클라우드기반의 제공 기업을 선정할 예정
- ⑤ 데이터레이크 사업은 민간·공공에서 보유한 정형/비정형 등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축적·관리하고, 데이터 융합·분석 및 AI 모델 개발을 통해 AI·데이터기반의 혁신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대 5개 도메인 분야를 선정할 예정이며, 도메인 분야 간에도 학습·분석이 가능하도록 연합 데이터레이크로 운영할 예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패권 경쟁을 주도하는 미래 청사진,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수립 착수

2024-04-0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수립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처음으로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세계 주요국 간의 기술패권 경쟁과 가속화되는 디지털 전환에서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12대 국가전략기술'의 효과적 육성을 목표로 함

< 12대 국가전략기술 · 50개 세부 중점기술 >



자문위원들은 국가전략기술 선정 이후 전략로드맵 수립, 핵심 프로젝트 사업 선정 등의 주요 정책동향 및 최근의 미·중 기술패권 경쟁 양상에 관한 발제를 청취한 뒤, 1차 기본계획의 수립방향과 주요 추진과제에 대한 심층 검토를 진행함

특히, 자문위원들은 토의 과정에서 AI·바이오 등을 중심으로 가속화되는 기술간 융복합 및 주요국 정책변화에 주목하며 신형 분야 및 공급망 핵심기술에 대한 선제적 식별·지원 필요성과 함께 실질적 기술확보를 위한 국제협력 및 도전적 연구 강화를 주요한 과제로 논의함

과기정통부는 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분과별 실무 토의, 관계부처 의견수렴, 대국민 공청회 등을 거쳐 전 부처를 포괄하는 국가전략기술 육성 비전, 기술별 목표 및 주요 정책과제를 마련하여 6월 중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임

산업통상자원부

세계1위 바이오의약품 제조허브 도약을 위한 「바이오제조 혁신전략」 발표

2024-04-01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바이오산업이 급성장하고 공급망 확보가 중요해짐에 따라 주요국이 바이오제조 선점을 위해 경쟁적으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 1위 바이오의약품 제조허브 도약을 위해 「바이오제조 혁신전략」을 발표함

산업통상자원부는 「바이오제조 경쟁력 강화회의」(제5차 수출현안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 바이오기업 뿐 아니라 한화, 아미코젠 등 바이오소부장기업 및 바이오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바이오제조 발전방향과 전략을 논의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투자) 17.7조원 규모의 바이오의약품 분야 민간투자 밀착지원

- 첨단바이오제조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한 R&D 지원, 바이오소부장 생태계 조성, 산업기반구축, 글로벌 진출 등에 2.1조원('24~'30)의 예산을 지원하여 '30년까지 17.7조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밀착 지원함

② (제조) 첨단바이오 제조 선점을 위한 「한국판 BioMADE」 사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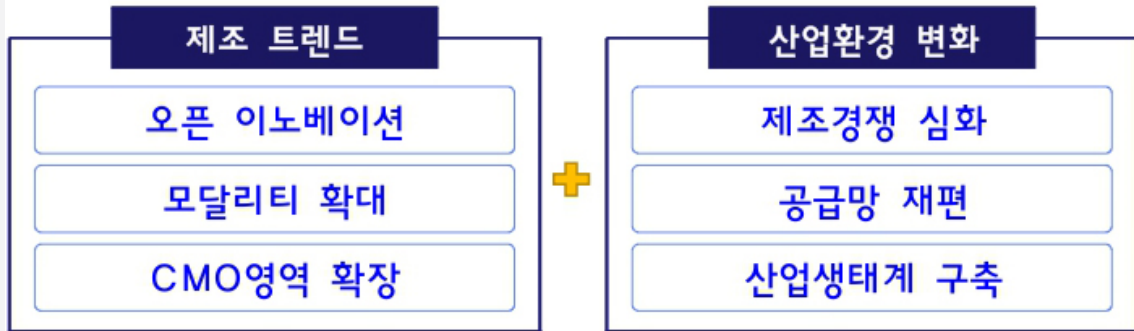
- 첨단바이오 생산공정 고도화를 위한 「한국판 BioMADE」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추진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구축할 공공 바이오 파운드리와 연계하여 생산공정을 고도화하고 상용화를 가속하기 위해 미국 첨단바이오제조혁신센터 등 국제기관과 협력하여 바이오제조 혁신플랫폼을 구축할 예정

③ (소부장) 바이오 기관과 「바이오소부장 실증지원 강화 MOU」 체결

- MOU에 참여하는 기업과 지원기관은 연대협력 협의체 참여를 통해 「바이오소부장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금년부터 소부장 제품에 대한 트랙레코드 확보를 본격 지원
- 정부 역시 올해부터 98종의 바이오소부장에 대해 글로벌 규격 공인시험 분석 등 실증 지원

<추진 과제>

- ◇ 글로벌 제조능력 경쟁 심화 → 공정·소부장 고도화로 **제조역량 강화**
 ◇ 클러스터·인력·글로벌 등 **투자·수출 및 성장기반 확대**



비전 및 정책방향

비전

세계 1위 바이오의약품 제조허브 도약

목표

바이오의약품 생산 15조원, 수출 100억불 ('30)

4대 혁신 전략

❶ (투자) 바이오의약품 제조 초격차 확보

① 17.7조원 규모 민간투자 지원+② 한국판 BioMade 구축

❷ (소부장) 글로벌 바이오소부장 스타 양성

① Two트랙(국산화·글로벌협력)+② 4단계(R&D-투자-실증-공급망진출)지원

❸ (인프라) 글로벌 생산허브 도약기반 마련

① 산학연병 생태계 조성+② 산학연 연계 인재 보급고 마련

❹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경제영토 확장

① 민간협력 바탕으로 수출확대+② 통상협력으로 뒷받침

주요 추진과제	추진일정	주관
1. 바이오의약품 제조 초격차 확대		
① 투자		
❶ 17.7조원 규모 민간 시설투자 적기 이행	'24~'30	산업부, 협회
❷ 산업투자전략회의를 통한 애로해소 지원	'24~	산업부
② 공정		
❶ 국가 바이오파운드리 구축	'25~'29	산업부, 과기부
❷ 첨단바이오의약품 맞춤형 제조공정 기술개발 사업 추진	'25~	산업부, 식약처
2. 글로벌 바이오소부장 스타 양성		
① R&D		
❶ 바이오 소부장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24.上	산업부
❷ 바이오 소부장 국제공동 연구 협력 지원	'24~'28	산업부
② 투자·실증		
❶ 바이오소부장 특화단지 맞춤형 육성계획 수립	'24.上	산업부, 지자체
❷ 바이오소부장 실증지원 MoU	'24.上	산업부, 지원기관
③ 공급망		
❶ SCCD 채널을 활용한 바이오소부장 쇼케이스 개최	'24.上	산업부, 협의체
❷ 바이오소부장 연대협력협의체를 통한 글로벌 협력	'25	산업부, 협의체
3. 글로벌 생산허브 도약기반 마련		
① 성장기반		
❶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24.上	산업부, 지자체
❷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 지원방안 마련	'24.下	산업부, 지자체
② 인력양성		
❶ 바이오아카데미 설립 추진	'25~	산업부, 대학
❷ 바이오 특성화대학원 지정	'24	산업부, 복지부
4. 바이오의약품 경제영토 확장		
① 수출		
❶ K-바이오 데스크 설치	'24	KOTRA
❷ 해외 인허가 목적 의약품에 대한 포괄 수출승인 적용	'24~	산업부
② 협력기반		
❶ 글로벌 산업기술 협력센터 구축	'24~	산업부
❷ 한미 바이오산업 라운드테이블 개최	'24.6	산업부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2024년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 6건을 추진하기로 함. 한시적 규제유예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완화·중단·특례 등)하는 것으로, 방통위는 2016년에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외주제작물 의무편성비율 폐지 등 5건을 시행한 바 있음

< 2024년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 >

분 야	주요 과제
생활규제 혁신	① 비영리 공동체라디오의 청취자참여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 완화(2년)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	② 영세 휴대폰 유통점 대상 모니터링 부담 경감(1년) ③ 소상공인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사전수신동의 절차 의무 유예(2년)
투자·창업 촉진	④ 방송프로그램 제작협찬 규제 완화(2년)
경영부담 경감	⑤ 지역방송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완화(2년) ⑥ 방송편성책임자 신고서류 간소화(2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생활규제 혁신’ 분야에서 공동체라디오의 청취자참여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 완화
 - 공동체라디오방송 사업자의 편성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청취자참여 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을 기존 20%에서 5%로 완화하여 적용
- ②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 분야에서 영세한 휴대폰 유통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니터링 축소
 - 현재 전국 유통점에 대해 연중 불공정 영업 및 이용자 차별행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단 말기유통법 등의 위반행위가 없는 영세·소규모 유통점에 대한 모니터링 횟수를 축소하여 유통점의 자율성 보장을 통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
- ③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 분야에서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소상공인의 사전수신동의 절차 의무 유예
 - 정보통신망법상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명시적 사전수신동의가 필요하나, 이용자가 사업장에 예약문의 등 전화를 한 경우에는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사전수신동의로 간주함
 - 경기 불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홍보(영업시간, 위치, 이벤트 등) 메시지를 자동 발송하는 서비스 이용으로 영업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보임
- ④ ‘투자·창업 촉진’ 분야에서 방송프로그램 제작협찬 규제 완화
 - 지상파방송 3사의 일부 방송프로그램에 한해 적용되어 온 제작협찬 고지 제한 기준(방송프로그램 회당 제작비 및 편성 횟수 등) 완화 추진
- ⑤ ‘경영부담 경감’ 분야에서 지역방송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완화
 - 기존 지역민영방송 3.2%, 문화방송 지역계열사(지역MBC) 20%이던 의무편성비율을 완화하여 지역방송사의 제작비용 부담을 낮추고, 자체제작을 촉진하여 지역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

⑥ ‘경영부담 경감’ 분야에서 방송편성책임자 신고서류 간소화

- 그간 방송편성책임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와 동일하게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확인사항이 적은 방송편성책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이력서 제출 면제
- 한시적 규제유예 시행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별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추진하며, 조속한 이행을 위해 시행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상반기 중 완료를 목표로 추진
- 시행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과제별로 유예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장·추가개선·효력상실 여부 등 결정

금융위원회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11조원+@ 규모의 은행권
지원프로그램 개시

2024-04-01

금융위원회는 신산업 진출을 원하는 중견기업을 위한 우대금리 대출프로그램 등 총 11조원 이상의 금융지원프로그램이 개시된다고 밝힘.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2월 15일 발표된 76조원+@ 규모의 ‘맞춤형 기업금융지원방안’ 및 3월 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5대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은행권이 협업을 통해 기업의 수요에 맞춤형으로 촘촘하게 대응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신성장 분야 진출 중견기업을 위한 전용 저리대출 프로그램(6조원)

- 산업은행과 5대은행은 신성장분야로의 신규진출 및 확대투자를 원하는 중견기업을 위해 최초로 중견기업 전용 저금리 대출프로그램 출시
- 성장잠재력이 높은 9대테마, 284개 품목으로 구성된 ‘혁신성장공동기준’의 품목을 생산·활용하는 중견기업이 대상
- 설비투자, R&D자금 및 운영자금에 대해 업체당 최대 1,500억원(시설자금 최대 1,000억원, 운영자금 최대 500억원, 두 종류의 자금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음)까지 기존 금리에 비해 1%p 금리를 우대하여 대출 지원
- 중견기업이 ‘혁신성장공동기준’에 해당하는 품목을 직접 생산 및 활용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해당 품목에 관련된 전·후방 업체도 폭넓게 이용 가능
- 산업은행과 5대 은행은 내부 시스템에 혁신성장공동기준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했거나 ‘혁신성장공동기준 매뉴얼’을 통해 개별 확인

【혁신성장공동기준* 해당상품 예시】

9대 테마	상품 예시
첨단제조 · 자동화	- 입체프린팅, 메세가공, 지능형기계, 로봇, 드론, 인공위성, 첨단방산 등
화학 · 신소재	- 기능성 탄소소재, 특수코팅, 나노섬유, 바이오화학소재, 이온성액체 등
에너지	- 태양전지, 풍력발전, 원자력발전, 수소에너지, 스마트그리드 등
환경 · 지속가능	- 스마트드론 파밍, 탄소포집 및 저장, 업사이클링, 모듈러 건축 등
건강 · 진단	- 재생의료, 나노약물전달체, 개량신약, 의료용 임플란트, 수술용 로봇 등
정보통신	- 5G통신,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확장현실, 대화형 플랫폼, 빅데이터 등
전기 · 전자	- 시스템반도체, AI칩, 무선충전, 스마트조명, 양자기술 등
센서 · 측정	- 생체인식, 나노센서, 스마트센서 등
지식서비스	- 온라인게임, 케이팝, 에듀테크, 메타버스 등

* 혁신성장분야로의 효율적 정책금융지원을 위해 정책금융기관 등이 최신 기술 및 산업트렌드 및 정책을 포괄하여 마련한 공통기준 (‘17년 도입, ‘23.3월 5차개정 적용)

② 매출하락 등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금리인하 특별프로그램(5조원)

- IBK기업은행과 5개은행은 5조원 규모 「중소법인 기업 대상 금융비용 경감 특별 프로그램」 운영 시작
-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지만, 이자부담이 큰 기업을 대상으로 1년간 이자부담을 경감하여 중소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 신용등급, 재무정보 등을 통해 확인된 정상 거래 중인 중소기업의 대출 중 대출금리가 5.0%를 초과하는 건에 대해 차주 신청시 1회에 한해 최대 1년간 대출금리를 5%까지 감면(최대감면폭은 2%p로 제한) 혜택 제공

* ‘23년 은행권 중소기업 지원방안(’23.1.26)에 따른 대출원금 감면 프로그램과 중복 이용은 불가

< 중소기업 기업 금융비용 경감 특별프로그램 지원대상 기업 >

※ ①~⑥의 조건을 모두 만족 : “정상영업 기업 중 이자부담이 큰 중소기업”

- ① 금감원 표준 신용등급체계(10등급 기준) 상 7등급 이상 기업
- ② '02년 연매출 대비 '23년 연매출 하락 (결산이 안 된 기업의 경우 21년 연매출 대비 22년 연매출 하락)
- ③ 이자보상배율 1미만 (단, 3년 연속 1 미만인 한계기업은 제외)
- ④ 자본잠식이 아닌 기업
- ⑤ 부채비율 400% 미만인 기업
- ⑥ ‘영업이익 > 0’ 인 기업

- 지원대상 대출은 지원대상 기업이 보유한 대출금리 5.0% 이상의 대출임. 다만, 정책적 저금리(대외 연계) 대출*, 별도로 정해진 금리를 적용받는 대출**, 한도 여신(단, 수시로대출은 포함), 연체 중인 대출은 제외

* 재정기금대출, 지자체 이차보전대출, 협약대출, 보증서담보대출, 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C1, C2) 등

** 외화대출, 대출금리 상한선(9.5%) 적용 계좌 등

- 중소기업이 해당은행에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은행은 신청기업이 지원대상인지를 확인하고, 신청기업은 현재보유 중인 대출에 대해 1년간 즉시 적용하거나 또는 만기연장 개시 시점부터 1년간 적용받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③ 은행권 공동 신속금융지원프로그램 지원 강화

- 4월부터는 은행권 공동으로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신속한 정상화를 돕는 「신속금융지원프로그램」도 확대
- 은행권은 시장 상황에 따라 중소기업 여신이 과도하게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08년부터 「신속금융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이는 주채권은행이 중소기업의 산업·영업·경영·재무위험 및 현금흐름 등을 평가하여 일시적 유동성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지만 정상경영이 가능한 경우(기업신용위험평가결과 B등급) 기업의 신청에 따라 일정 기간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고 대출금리 인하 등을 제공하는 제도임
- 4월부터 1년동안은 일시적 유동성 위험에 직면한 기업뿐만 아니라, 일시적 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도 지원대상 포함
- 정상기업이지만 전기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하거나 현금흐름이 음수(-)인 등 기업신용위험평가를 다시 시행하면 B등급을 받을 것이 유력하다고 주채권은행이 판단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 포함
- 올해 신청한 기업에게는 1년간 대출금리를 크게 인하하여 주요 시중은행의 조달금리 수준으로 금리를 낮춰서 (현재기준 3%대) 신속하고 확실한 정상화를 위해 노력

금융위원회

「기술금융 개선방안」 발표

2024-04-03

금융위원회는 기술금융 관련 기관들과 TF를 구성하여 은행과 평가사의 의견 등을 토대로 마련된 「기술금융 개선방안」을 발표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기술금융 원래의 취지를 살려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 강화

- 담보와 매출이 부족하더라도, 기술력을 평가하여 대출한도 및 금리 등에 대한 우대를 제공하는 기술금융의 취지를 강화하기 위해 은행의 테크평가 지표를 개편
- 테크평가에 기술금융 우대금리 관련 지표를 추가하여 은행이 기술등급별로 어느 정도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지 평가
- 테크평가의 신용대출 공급 지표 비중을 확대를 통해 담보 중심의 은행 여신관행을 개선하여 기술기업의 금융접근성을 강화

② 평가사가 은행으로부터 독립되어 평가할 수 있도록 기술신용평가의 독립성 강화

- 은행이 평가 수수료보다는 평가사의 평가서 품질에 따라 평가 물량을 배정함으로써 평가사가 평가품질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은행 지점과 평가사간 발생할 수 있는 유착관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은행 본점이 지점에 평가사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변경
- 평가 의뢰자인 은행이 평가사에 평가 등급을 사전에 문의하거나 특정 등급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신용정보법에 은행에 대한 행위규칙을 마련
- 기술금융 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하여 은행이 비기술기업에 대해 평가 의뢰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

③ 기술신용평가 내실화

- 평가의 현지조사를 의무화하고, 평가등급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세부평가의견 작성을 의무화
- 평가자가 임의로 정성점수를 조정하여 기술등급을 상향하는 등의 관대한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AI 기술 등을 활용하여 기술등급 산정에 관한 가이드를 마련

④ 기술금융의 사후 평가 강화

- 신용정보원의 품질심사평가 결과, 평가 품질이 우수한 평가사에는 정책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흡한 평가사에는 미흡한 평가사의 평가를 받은 대출잔액을 한국은행 금융중개자금지원 대출 실적에서 제외하여 패널티를 부여
- 미흡한 평가사의 대출 잔액이 한국은행 금융중개자금지원대출 실적에서 제외됨에 따라 은행은 품질등급이 우수한 평가사에 더 많은 평가를 의뢰할 것으로 예상

⑤ 기술금융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기술금융의 규율 강화

- 기술신용평가사에 대한 행위규칙을 규정하고 있는 신용정보법을 개정하여 타인의 자격증을 도용하여 평가를 하는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평가사의 행위규칙을 정비
- 평가사가 기술신용평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평가등급 사전제공, 관대한 평가결과 암시 등)를 할 경우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에 근거를 마련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제도적 정비사항은 금년 중 완료 추진을 목표로 밝힘

- 신용정보원의 가이드라인, 매뉴얼 등은 상반기 중 신속하게 정비를 완료 (전산 관련 사항은 전산개발 등을 고려해 연내 시행)
- 신용정보법 개정은 상반기 중 개정안을 마련해 금년 중 국회 통과 추진

구분	조치내용	조치사항	조치기한
기술금융의 취지 강화	우대금리 명확화	테크평가 매뉴얼 개정 신청원 전산 연계	'24.上 '24.下
	신용대출 확대 유도		
평가의 독립성 강화	평가물량 배정기준 마련	은행 시스템 마련	'24.上
	평가사 선택 랜덤		
	은행 행위규칙 마련	신용정보법 개정	'24.下
	기술금융 업종 정비	가이드라인 개정	'24.上
기술신용평가 내실화	현지조사 의무화	가이드라인 개정 전산 연계	'24.上 '24.下
	세부평가의견 작성 의무화		
	정량평가 기준 마련	표준기술평가모형 개정	'24.上
	AI 가이드라인 개발	가이드 마련	'24.下
평가 강화	평가사에 대한 평가강화	품질심사평가 매뉴얼 개정	'24.上
	평가결과에 대한 인센티브 및 패널티	금중대 규정 개정 (한국은행)	완료
규율체계 정비	평가사 규율체계 정비	신용정보법 개정	'24.下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내용	시행일자
기획재정부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2024-04-05 시행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작황 부진 등으로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는 과일류의 공급 부족을 해소하고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2024년 1월 19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바나나, 파인애플 등 7개 물품의 한계수량을 수입전량으로 확대하고, 체리·키위 등 5개 물품에 대해 2024년 4월 5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0퍼센트부터 10퍼센트까지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별표 6, 별표 9 신설 등)

국방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4-02 시행
-----	---	---------------

방위산업 실태조사에 필요한 정보의 원활한 수집을 위해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개인사업자의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준재무상태표 등의 자료를 추가하고, 방위산업 발전 및 수출지원 등 관련 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위산업발전협의회 상시 참석위원의 범위를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고위공무원 및 수출입은행 임직원 등으로 확대하며, 군수품에 대한 정부 품질인증 부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해당 업무를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위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3조제3항제1호, 제20조제6항, 제22조제2항제1호, 제34조제1항제11호 신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4-02 시행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개발이익을 종전에는 ‘건축물의 매각수입 등을 포함한 총수익에서 건축비용 등을 포함한 총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산업구조고도화계획의 승인신청일과 산업구조고도화사업의 준공신청일 간의 토지가격 상승분만으로 단순화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개발이익의 재투자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 및 대행사업자가 준공인가일 전까지 보증서 또는 보험증권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투자자의 기한을 3년의 범위에서 연기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재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개발이익 재투자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6조제5항, 제58조의5제1항, 제58조의5제2항제3호, 제58조의5제6항 신설, 제58조의5제6항 신설 등)

환경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4-02 시행

지방분권 확대를 통한 지방시대의 효율적 실현을 위해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권한을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의 장에게 위임하고, 환경부장관은 해당 대도시의 장에게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비용으로 지급하도록 하되 해당 대도시의 장은 징수 비용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경비와 환경 개선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8조의2제1항, 제8조의2제2항, 제8조의2제3항, 제28조제1항 등)

환경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4-04-02 시행

환경부장관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권한을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의 장에게 위임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결과의 기록·관리 주체에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의 장을 추가하고,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 등 관련 서식에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제5조 전단, 별지 제1호서식 제1호, 별지 제2호의2서식 등)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4.04.01. ~05.13.

에너지바우처 운영상 이미 시행 중인 내용 중 일부가 관련 서식에 적절히 반영되어 있지 않고 기타 제도개선 요구도 제기됨에 따라, 신청·접수 시 수급권자와 지자체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에너지이용권의 사용 편의 제고를 위해 관련 서식을 일부개정 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에너지바우처 운영지침 대비 일부 누락된 내용과 기타 제도개선 요구 등을 반영하여 관련 서식 개정 (안 별지 제1호, 제3호 서식)
- 현재 하절기 바우처 지원금액은 기본적으로 요금차감 후 잔액에 대해 동절기 이월이 가능토록 운영 중이나, 최근 요금차감 없이 전액 이월을 허용해주는 제도개선 민원 제기
⇒ 수급권자의 바우처 사용 편의 제고 등을 위해 신청서에 요금 차감 또는 미차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란 추가 (별지 제1호)
 -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동절기의 경우 에너지바우처를 대신하여 유사 에너지이용권 사업(등유바우처, 연탄쿠폰)을 선택할 수 있으나 현재 신청 서식에는 이 부분이 누락되어 있음
⇒ 동절기 신청서에 ‘타동절기 이용권’ 선택란 추가 (별지 제1호)
 - 현재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시 검토 결과를 통보해주고 있으나, 시행규칙 통지서 서식에는 이 부분이 누락되어 있는 상황
⇒ 수급권자가 당겨쓰기 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에너지이용권 통지서’ 서식에 관련 내용 추가 (별지 제3호)

※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지원팀](mailto:energy@kita.go.kr) (전화: 044-203-5161, 팩스: 044-203-4761)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4.01. ~05.13.
-------	--------------------	------------------------

우리사주조합원의 참여권을 확대하고 원활한 조합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우리사주조합원의 조합원총회 소집 근거를 신설하고, 우리사주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의 업무범위를 확대, 우리사주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에 대한 구체적 방법을 명문화하는 등** 현행 우리사주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조합원의 조합원총회 소집 근거 신설 (안 제12조제3항 신설)

- 현행법상 조합장이 없거나 조합장이 소집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원천적으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할 수 없어 조합 운영이 불가능함에 따라 조합원의 참여권을 확대하고 원활한 조합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조합장이 없거나 조합장에 의한 총회 소집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조합원이 직접 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② 수탁기관의 우리사주제도 지원업무 명확화 및 업무범위 확대

- 우리사주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수탁기관의 교육·자문에 대한 업무 범위를 구체화 (안 제24조의2제4호)
-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해 우리사주 시장매입 등 수탁기관이 조합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의 업무 범위에 ‘조합기금 조성 등 우리사주 취득 및 관리에 수반하는 조합업무 지원 및 대행’을 추가 (안 제24조의2제5호 신설)

③ 지배관계회사 개념의 명확화 (안 제9조제1호, 제2호)

- 특정 우리사주조합은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와 함께 지배관계회사 소속 근로자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나 지배관계회사의 지분 요건이 지분을 직접적으로 소유하고 경우 외에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불분명하므로 조합원 자격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조합원 자격의 빈번한 변동으로 인한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분 요건을 구체화하고 지분을 ‘직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로 명시

④ 증권금융회사 관련 인용조문의 정비 (안 제24조의6제4호)

- 현행 법령에서 규정하는 증권금융회사 관련 인용조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24조 전체이므로 “제324조제1항”을 “제324조”로 문구 정비

⑤ 우리사주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 방식 구체화

- 우리사주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시 정해진 기간 동안 의사표시 또는 위임 요청이 없는 주식의 의결권은 해당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 방법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므로 의사표시 또는 위임 요청이 없는 주식의 의결권은 의사표시가 있는 나머지 주식 수의 찬성·반대 비율에 따라 산정하도록 구체적 방법을 명시적으로 규정 (안 제28조제1항 제2호 및 제28조제2항제2호)
- 안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 (안 제28조 제3항 신설)

※ 문의처 : [고용노동부 디지털노동대응TF](mailto:고용노동부_디지털노동대응TF) (전화: 044-202-7072, 팩스: 044-202-8074)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4.04.01.
~05.13.

우리사주조합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시 단주의 의결권 처리 방식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우리사주 중도인출 사유를 추가하여 관련 법령 간 충돌을 해소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우리사주조합의 의결권 행사방법 명시 (안 제17조의2)**

- 우리사주조합의 의결권 행사 시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찬성표는 단주를 절사하고, 반대표는 단주를 절상하는 방식으로 그 행사방법을 명시

② **우리사주 중도인출 사유 추가 (안 제17조제2항제4호, 제5호, 제6호 신설)**

- 상법에 따른 주식 교환 시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한 예탁주식의 인출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경우(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가 있으나 현행 법령상 우리사주 중도인출 사유로 규정되지 않아 인출이 불가능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은 이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소수주주로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그 권익이 제한되므로 상법상 예탁주식의 인출이 필요한 경우를 우리사주 중도인출 사유에 추가하여 법령 간 충돌을 해소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의 권익을 보호

※ 문의처 : [고용노동부 디지털노동대응TF \(전화: 044-202-7072, 팩스: 044-202-8074\)](tel:044-202-7072)

국토교통부

궤도운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4.05.
~05.16.

최근 노후 궤도시설이 증가하고, 잦은 운행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궤도시설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궤도운송법 개정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을 개정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 제도 운영상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법인인 궤도사업자 임원 변경` 항목을 신고대상에서 삭제, 변경신고 기간을 30일 이내로 명시함 (안 제2조)
- ② 안전검사전문기관이 준공 단계에서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함 (안 제4조)
- ③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기준에 경력 '3년'을 추가하여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비영업용 전용궤도운영자는 전문기관의 실무교육 이수자(24시간 이상)에 한해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이 가능하도록 기준 완화 (안 제18조)
- ④ 법 개정으로 정밀안전검사가 도입됨에 따라 정밀안전검사 신청절차, 검사유효기간, 당해 년도 정기검사 면제 등의 내용을 규정함 (안 제13조)
- ⑤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안전검사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법 개정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 규정 신설 (안 제18조의2)
- ⑥ 법 개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기준에 정밀안전검사, 수시검사,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 용어 수정 및 과태료 가중·감경 사유를 구체화함 (안 별표1 4)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 \(전화: 044-201-4889, 팩스: 044-201-5673\)](tel:044-201-4889)

국토교통부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4.04.05.
~05.16.

최근 노후 궤도시설이 증가하고, 잦은 운행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궤도시설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궤도운송법 개정시행일에 맞춰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 제도 운영상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5분 이상의 운행 지연과 와이어로프 단선, 차량 탈선, 구동부 고장, 차량 역주행 등 궤도운행에 지장을 주는 장애를 운행장애의 세부 범위로 규정함 (안 제2조의2)
- ② 허가 신청 서류에 궤도시설의 연결장치 안전성 검증 서류, 차량의 구조확인서를 추가하여 안전 검증을 강화함 (안 제3조)
- ③ 준공검사 신청서류인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항목을 구체화 및 추가 보완하고, 지자체가 안전검사전문기관을 통해 안전 관리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안 제9조, 별표4)
- ④ 안전관리책임자의 해임·퇴직 후 30일 이내에 신규자를 선임하도록 명시하고, 안전관리책임자 부재시 직무대행자 지정과 직무대행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게 규정함 (안 제20조)
- ⑤ 부상자 기준을 24시간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자로 규정하고,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이 발생 시 지체 없이 전화 등 구두 보고 후 72시간 내 궤도운송 사고보고서를 작성·보고하도록 규정함.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사고조사 업무 및 위탁 규정을 마련함 (안 제22 조)
- ⑥ 궤도시설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해야 할 정보현황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점검내역 등을 시스템에 등록 시 행정기관에 보고 한 것으로 갈음하는 규정을 마련함 (안 제23조의2)
- ⑦ 정밀안전검사 도입에 따른 설비의 안전성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검사전문기관의 기술인력 및 시설기준을 강화함 (안 별표1)
- ⑧ 점검·정비자 배치기준을 마련하여 상시 점검·정비가 이루어지게 하고, 기존 운전자 자격기준을 자체교육 이수로 완화하며, 왕복식 삭도사업자는 차량이 정지하여 여객을 구조하려고 하는 자가 차량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경우 차장 탑승 의무 제외 (안 별표2)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http://www.kmtr.go.kr) (전화: 044-201-4889, 팩스: 044-201-5673)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4.04.05.
~05.16.

친환경자동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배터리 등 화재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하이브리드자동차의 고전원배터리 등에 대한 검사기준을 내실화하여 도로 안전을 확보하고, 장거리 운행 및 과다 적재 등으로 다른 자동차에 비해 교통사고 위험도가 높고 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대형 승합자동차와 화물자동차의 검사기준을 강화하여 국민 다수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 ① 전기자동차 · 수소전기자동차 ·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검사기준 및 항목 내실화 (안 제80조, 별표 15 및 16, 별지 제48호의3서식)
- 고전원전기장치의 작동불량 상태 구체화 및 전자장치 진단 검사시 부적합 고장진단 코드를 마련하고, 전기자동차 · 수소전기자동차 등의 진단을 위한 전자장치진단기 사양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자동차검사 결과표를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로 일원화하여 모든 검사기관에서 동일한 검사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해당 서식에 배터리 상태 검사 항목을 추가하여 배터리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도록 개선
- ② 대형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의 정기검사 기준 및 방법 개선 (안 제80조제2항)
- 사업용 대형승합차의 앞바퀴에 내구성이 약한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지하고, 원동기의 비정상적인 진동 · 소음 발생, 윤활유 유량 기준 과소 · 과다 및 연료 계통의 심한 부식 등의 경우 자동차의 검사 결과 처리 시 부적합 처리하도록 규정
- ③ 자동차검사 관련 규제 개선 (안 제80조, 안 제154조의2, 별표 15 · 16 · 18)
-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창유리의 가시광선투과율 검사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민간검사소)의 검사업무 범위 및 시설기준 중 검사 전용진로는 1개로 하되, 총 중량 5.5톤을 초과하는 대형차검사 진로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http://www.korea.go.kr) (전화: 044-201-3858, 팩스: 044-201-5587)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4.05.
~05.1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2024.1.9., 일부개정, 법률 제19990호, 2024.3.19., 일부개정, 법률 제20398호)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요청 권한 규정 (안 제2조의5)
- ② 벤처기업 성장촉진 지원사업의 종류 구체화 (안 제2조의6)
- ③ 벤처지원전문기관의 지정기준·절차, 지정취소 및 운영 등 규정 (안 제2조의7)
- ④ 연구원의 휴직이 허용되는 연구기관의 범위 규정 (안 제11조)
- 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방법이 법률로 상항됨에 따라 삭제 (안 제11조의3)
- ⑥ 성과조건부주식 교부계약의 형태, 신고제도 운영을 위한 절차 규정 (안 제11조의12)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http://www.korea.go.kr) (전화: 044-204-7706, 팩스: 044-204-7709)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4.04.05.
~05.1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2024.1.9., 일부개정, 법률 제19990호, 2024.3.19., 일부개정, 법률 제20398호)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서식 추가 (안 제2조의2, 별지제10호)
- ②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서 체결, 해지·해제 및 자기주식 취득 신고 서식 추가 (안 제4조의7, 별지제11호, 별지제12호, 별지제13호)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 \(전화: 044-204-7706, 팩스: 044-204-7709\)](tel:044-204-7706)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4.01.
~05.13.

보험업법 개정('24.2.6일 공포)에 따라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위탁기준 마련,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위탁시 불공정행위, 손해사정사 교육기준 마련, 손해사정업자의 공시사항 등 보험업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위탁기준 마련 (안 제96조의3)
 - 법 제185조제4항제1호에 따른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위탁기준을 마련(손해사정업자 평가기준, 위탁절차, 위탁대상 업무 범위 등)
 - 법 제185조제4항제2호의 손해사정업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보험회사의 직전년도 손해사정 위탁건수의 50%로 규정
- ②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위탁시 불공정 행위 (안 제96조의6)
 - 법 제185조제5항제8호의 불공정행위로서 자회사와 비자회사를 차별하는 행위 등을 규정
- ③ 손해사정사 교육 기준 마련 (안 제96조의7, 별표4의 4호)
 - 손해사정사 및 보조인에 대해 2년마다 교육을 받도록 규정
 -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단체를 운영
- ④ 손해사정업자 공시 사항 (안 제96조의8)
 - 법 제187조제4항에 따라 손해사정업자가 공시해야 하는 사항으로서 조직·인력, 손해사정 선임 및 위탁계약 체결 현황을 규정

※ 문의처 : [금융위원회 보험과 \(전화: 02-2100-2962, 팩스: 02-2100-2947\)](tel:02-2100-2962)

금융위원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4.02.
~05.1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령상 면책특례 대상이 되는 '채권금융기관'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법상 공제조합 등을 추가하여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한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재입법시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에서 지적된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채권금융기관 확대 (안 제2조)

- 채권금융기관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융자·보증 등의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법상 공제업자를 추가

② 금융채권자협의회 배제 기준 관련 위임근거 마련 (안 제7조)

- 금융채권자협의회에서 배제할 금융채권자의 범위·기준을 금융위원회가 구체화하여 고시하도록 규정

③ 경영평가위원회 성별균형 고려 (안 제10조)

- 경영평가위원회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을 선임하도록 규정(성별영향평가)

④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기피·회피 규정 신설 (안 제15)

-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위원에 대한 기피·회피 근거 마련(부패영향평가)

⑤ 새마을금고에 대한 재산운용제한 특례 인정 (안 제17조)

- 재산운용제한 특례 대상에 새마을금고법 제29조제1항,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추가

※ 문의처 :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tel:02-2100-2921) (전화: 02-2100-2921, 팩스: 02-2100-2929)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4.04.
~05.16.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발생을 방지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건전한 영업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4. 2. 13.)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유효기간 갱신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불수리 사유 (안 102조)

- 법률에서 위임한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을 시행령에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②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안 제102조의2)

- 법률에서 위임한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시행령에 규정

③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유효기간 갱신 절차 (안 제102조의3)

-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1개월전까지 유효기간 갱신을 위한 신고를 하도록 절차 마련

※ 문의처 :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전화: 02-2100-2673, 팩스: 02-2100-2679\)](tel:02-2100-2673)

3. 법률 발의(제출)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의원 등 10인)	2024-04-01 발의
---------	--	---------------

현행법은 경상남도 양산시에 양산시법원을 두고 있으나, 해당 법원에서는 소액심판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등 일부 사건만을 관할하고 이외의 사건들은 울산지방법원 및 울산가정법원에서 관할하고 있음

양산시는 2024년 1월 기준 경상남도에서 인구 수가 3번째로 많은 35만 5,347명의 인구를 가진 도시임에도, 양산 시민들은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울산지방법원·울산가정법원에서 사건을 처리하여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음

이에 양산시민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사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존의 양산시법원 대신 울산지방법원 양산지원 및 울산가정법원 양산지원을 설치하려는 것임 (안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별표 5 및 별표 7)**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 예정된 회의 일정 없음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자료집 등	4/8(월)	「THE 현안」 제6호 발간 - 저출산 · 고령화 시대의 이민정책	국회도서관	
	4/9(화)	「금주의 서평」 제673호(2024-14호) 발간 - 도서명 : 기후 리바이어던 - 저자 : 조엘 웨인라이트, 제프 만		
	4/9(화) 10:00	온실가스 국가인벤토리 통계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온실가스 국가인벤토리 통계 생산 절차 및 부문별 특징	국회예산정책처	의정관 417호
	4/11(목)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92호 발간 - 국회의원 보좌진이 바라본 제21대 국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미래연구원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29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자료집 등	4/1(월)	「THE 현안」 제5호 발간 - 독일과 미국의 청년 정치	국회도서관	
	4/2(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41호(2024-3호) 발간 - 미국의 중산층을 위한 사회주택 공급 입법례		
	4/3(수)	「World&Law」 제2024-7호 발간 - 등록 동거혼, 결혼제도를 보완할 수 있을까?		
	4/3(수)	「금주의 서평」 제672호(2024-13호) 발간 - 도서명 : 공정감각 저자 : 나임윤경 외		
	4/4(목)	「현안, 외국에선?」 제79호(2024-7호) 발간 - 일본의 의대 정원 증가와 지역 정원제		
	4/2(화)	「이슈와논점」 제2223호 발간 - 제로트러스트(Zero Trust), 새로운 보안 패러다임으로 의 전환	국회입법조사처	
	4/3(수)	「NARS 브리프」 제39호 발간 -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관련 쟁점과 해결과제		
	4/4(목)	「이슈와논점」 제2224호 발간 - ‘사실상 도로’를 둘러싼 분쟁,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4/1(월)	「Futures Brief」 제24-03호 발간 - 자원배분에 대한 기준과 인식 그리고 행복	국회미래연구원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04.01~04.07)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4/1(월)	금융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신속고발·통보(Fasttrack) 제도가 도입됩니다
4/1(월)	조세	토지 취득 이후 불리하게 변경된 감면조례에 따라 추정된 취득세, 재산세를 취소시킨 사례
4/1(월)	공정거래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시행과 그 시사점
4/5(금)	건설/부동산	신탁형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에게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4/5(금)	ESG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준비 - 금융위, 기업밸류업·지배구조 우수기업 추가 인센티브 제도 및 상장기업 배당절차 개선 현황 공개
4/5(금)	금융	상장폐지절차 간소화 정책 및 업무사례 소개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김광재 | 변호사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안현정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방세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성재열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